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13일

다산동장



세대주성명	성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박**	박** 1965-10-05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	거주불명등록이전 2021-10-13
김**	김** 1968-12-12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	거주불명등록이전 2021-10-13